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39

발의연월일: 2023. 3. 17.

발 의 자:이채익・박성민・백종헌

조은희 • 이종성 • 최영희

이 용・김미애・김용판

홍문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.

그러나 최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일원화된 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역시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).

법률 제 호

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"를 "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"(업무의 위탁)"을 "(권한의 위임·위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"을 "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·위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3조(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 제23조(재난안전통신망 기술 의 개발・발전의 촉진 등) ① 의 개발・발전의 촉진 등) (생 략)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 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 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-----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|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으로 정한다.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생략) 제25조(업무의 위탁) 이 법에 따 제2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----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----- 소속 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있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법 인 또는 단체에 위임 · 위탁할 수 있다.